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 (찬성자 15명)

나. 의안번호 : 제 1573 호

다. 발의일자 : 2024. 2. 5.

라. 회부일자 : 2024. 2. 7.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개방에 따른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정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 예약시스템 활용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테니스장 이용 시 구체적인 이용 시간 및 이용료와 고령자, 장애인
의 사용자를 위한 감면율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라.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2. 14. ~ 02. 1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 본 조례안은 서울 시민들의 테니스 운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테니스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제정안 주요 내용

구 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위치한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 4곳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
제3조 (이용 등)	- 일반 시민 누구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함.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테니스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일반 시민 개방에 따른 공정한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이용 시간 등)	- 테니스장 이용시간을 규정함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 시행, 테니스장 안전관리 상 뚜렷한 위해 발생 시 테니스장 이용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음. -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해 이용 시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
제5조 (이용료)	- 테니스장 이용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함. 10,000원~40,000원 (1면당, 2시간당) - 토요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 야간 이용료 30% 가산 (토요일·공휴일 제외)
제6조 (이용료의 감면)	- 이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함 65세 이상인 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유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제7조 (이용료의 반환)	• 이용료 반환 기준 명시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전 취소 - 이용신청을 한 당일 :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9 -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7 -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 : 전액 반환
제8조 (관리·운영)	• 시장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테니스장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
제9조 (운영의 위탁)	• 테니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테니스장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며, 5년 이내로 한번 갱신할 수 있음 •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제10조 (사용허가)	• 수탁자는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함 • 사용허가 기준을 명시 - 일반 시민에게 개방 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것 - 이용료 징수할 경우 제5조, 제6조를 따를 것 -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함.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 • 기존 시설물 변경,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설물 훼손, 분실 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 •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2조 (감독)	•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음 • 시장은 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13조 (위탁의 취소)	• 위탁 취소 사유 명시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 (사무의 위임)	• 모든 사무를 각 도로관리사업소장(동부·남부·북부·강서)에게 위임함

■ 국내 테니스 인구 및 테니스장 운영 현황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운동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테니스는 도심 내 위치한 테니스장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타 운동과 비교하여 운동용품 구입에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으로 인해 테니스 인구가 크게 증가¹⁾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2019년 818개소에서 2022년 873개소로 55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도 단 2개소 증가에 그침 ([표] 참조).

[표] 공공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현황

	2019년	2022년	
전국 ²⁾	818개소	873개소	55개소(6.7%) 증
서울시 ³⁾	66개소	68개소	2개소(3.0%) 증

- 급증하는 테니스 인구 대비 테니스장 부족으로 공공 테니스장의 예약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약하는 등 편법으로 예약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문제⁴⁾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부정예약 시 예약 취소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테니스장을 추가 설치하거나 공공기관 내 직원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1) 유통업체 추산 국내 테니스 인구: 2021년 50만명 → 2022년 60만명으로 증가

2)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3)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4) '테니스장 예약 경쟁에 국회 청원까지...', 한겨레, 23.4.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254.html)
'그런은 멀고 코트는 가까워 - 테니스 전성시대', 매경 이코노미, 23.04.21.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309310>)

필요한 실정임.

■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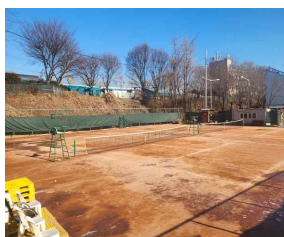
-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⁵⁾ 중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는 동부, 남부, 북부, 강서 4곳으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1~2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음([표] 참조).

[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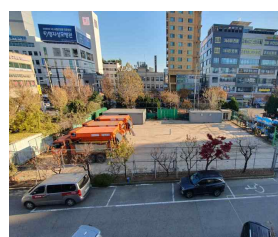
구 분		동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보유면수		2면	2면	1면	2면
이용 현황	일 반	1면 시민개방 (매주 토·일)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직 원	1면 직원사용	2면 직원사용	1면 직원사용	2면 직원사용
코 트 형 태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조 명 시 설		1개(고장)	없 음	없 음	없 음
기타 편의시설		• 의자 4개 • 대기실 1개	• 의자 4개 • 대기실 1개	• 보관창고 1개	• 의자 2개 • 보관창고 1개



〈 동부도로사업소 〉



〈 남부도로사업소 〉



〈 북부도로사업소 〉



〈 강서도로사업소 〉



[그림]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전경

5) 6개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 이 중 동부도로사업소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 등을 고려하여 '23.3월부터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주말(토·일요일) 주간 시간에 무료로 개방중에 있음.

■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동 조례안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이는 테니스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의 유료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유료 개방을 위한 법적인 선행 조치라 하겠음.

2)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2.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3.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4.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안 제2조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4곳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에 따라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서울시는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의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현재 제설제 및 건설기계 보관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테니스장을 정비하여 제설제 및 기타 자재 적재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며,

■ 북부도로사업소 청사 현황

- 대 지 : 9,972㎡ / 연 면 적 : 2,813.48㎡(차고지 2동 포함 4179.48㎡)
 - 본관동 864㎡, 별관동 897㎡, 경비동 66㎡, 세차동 494㎡, 야적장 492.48㎡, 제1 차고지 706㎡, 제2 차고지 660㎡
- 건설기계(차량) 현황 : 12종 26대(차량 19대, 건설기계 7대)



[그림] 북부도로사업소 전경

-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타 사업소와 달리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어 과거 테니스장 이용 시에도 주택가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테니스장 개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임.
- 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재난 대응이 도로사업소의 운영목적인 만큼 부족한 자재 적재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개방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조).

[표] 안 제2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2.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u>3.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u> 4.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삭 제> 3. (원안과 같음)

3) 테니스장의 이용 등 (안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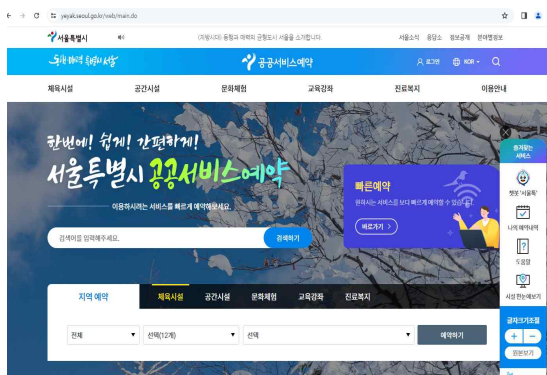
제3조(이용 등) ①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테니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테니스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니스장의 일반 시민 개방에 따른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안 제3조제1항은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테니스장의 이용 제한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은 테니스장 개방에 따른 시민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예약 관리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6)’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개방 취지를 고려할 때 시민들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을 통해 공평한 이용을 유도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그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그림]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등록된 테니스장

6)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www.yeyak.seoul.go.kr)’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시설대관, 운동시설, 문화강좌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4) 이용 시간 등(안 제4조)

제4조(이용 시간 등)

①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은 연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하절기 및 동절기 등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 시행, 테니스장 안전관리 상 뚜렷한 위해 발생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주 간 : 09:00 ~ 18:00

2. 야 간 : 18:00 ~ 22:00

②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이용 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 예정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 예정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 시간은 테니스 경기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 안 제4조는 테니스장의 이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이용 시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1항은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을 주간(9시~18시)과 야간(18시~22시)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을 시행하거나 테니스장의 안전관리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테니스장의 이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테니스장의 주·야간 사용 시간 구분은 안 제5조의 이용료 산정에 있어 야간에는 주간 이용료의 3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 야간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테니스장 내 조명시설이 고장이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시설 보수 및

확충이 선행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테니스장의 이용을 중단토록 하는 것은 서울시 내 도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도로사업소의 운영목적 상 폭우와 폭설 대비 시 대형 건설기계 이동이나 장비, 제설재 등의 적재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상의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은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한 이용시간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만 사용시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를 사용시간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료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이해됨.

5) 이용료(안 제5조)

제5조(이용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5조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를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토록 하려는 것임.
- 별표를 살펴보면, 테니스장 이용요금은 1면 2시간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공휴일과 야간에는 이용료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음.

[별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이용료(제5조 관련)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테니스장	1면당, 2시간당	10,000 ~ 40,000	-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요일·공휴일 제외)

- 이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만을 규정하여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이는 한편, 해당 테니스장이 위치한 지역 및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용자의 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부도로사업소의 테니스장은 하수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악취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개방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이용료)에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안 제5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5조(이용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이용료) ----- ----- . <u>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6) 이용료의 감면(안 제6조)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 안 제6조는 시장은 안 제5조의 이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1호는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7)에서 정하는 사람,

7) 제17조의2(고공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이용료의 50%를 감면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호는 차상위 계층과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
에게 30%를 감면토록 하고 있음.
- 이는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비롯하여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장
애인·경제적 약자 등을 위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에게 예우하기 위해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
- 한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당초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
복지 차원에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인
재개발원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
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호8)에 따라 시 직원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례에 비추어볼 때
- 안 제6조제3호의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참가자에 대한
이용료 전액 면제 조항과 더불어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
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에도 테니스장을 이용 시에도 이용료

말한다.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례 제7115호(2019. 5.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를 면제토록 추가하면서 안 제6조제1항 수탁자가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규정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안 제6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u>제3호</u>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 ----- ----- ----- <u>제3호 또는 제4호</u> ----- ----- -----.
1.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1. (원안과 동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2. (원안과 동일)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3. (원안과 동일)
< 신 설 >	4.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 전액 면제

7) 이용료의 반환(안 제7조)

제7조(이용료의 반환) 별표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때
 - 가. 이용신청을 한 당일 : 전액 반환
 - 나.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 반환
 - 다.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9
 - 라.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7
 - 마.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 안 제7조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나 이용신청일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토록 하는 한편, 5일전까지는 90% 반환, 1일전까지는 70% 반환, 당일 취소의 경우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9)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¹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운영하는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 12개소¹¹⁾에 대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가. 신청 당일 : 전액 반환
 - 나. 10일전 : 전액 반환
 - 다. 5일전 : 10분의 9
 - 라. 1일전 : 10분의 7

10) 제4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사전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 시립체육시설 중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과 동일하게 테니스장의 이용예약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됨.

8) 관리·운영(안 제8조)

제8조(관리·운영) 시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는 시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 이는 시장과 수탁자로 하여금 시민들의 테니스 운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된 테니스장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음.

11)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 12개소

-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인라인하키장, 풋살구장
-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 ▶ (고척돔) 축구장, 풋살구장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 ▶ (효창운동장) 축구장 / (장충체육관) 보조체육관, 다목적실 1·2

9) 운영의 위탁(안 제9조)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을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테니스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1항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탁 시 「공유재산법」 12) 및 동법 시행령 13)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계약하되, 연장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2호14)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운영 위탁할 때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10) 사용허가(안 제10조)

제10조(사용허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테니스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계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4. (생략)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테니스장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사용을 허가토록 하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별지 제4호 서식)를 득하도록 하는 한편,
- 사용허가 기준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의 활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로 규정하고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용허가 또는 변경 신청 시 사용일시 및 관리시설의 범위 등을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테니스장 운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11) 수탁자의 의무(안 제11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테니스장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한편,
-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설물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수탁자로 하여금 테니스장의 운영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공백없이 성실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안 제11조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제9조제4항의 협약에서 정한’ 관리자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사료됨([표] 참조).

[표] 안 제11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제9조제4항의 협약에서 정한 ----- ----- -----.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④ (생략)	④ (원안과 같음)

12) 감독, 위탁의 취소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안 제12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보고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안 제13조는 수탁자가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시장이 수탁자에게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토록 함에 있어 수탁자의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필요시 시정토록 하거나 규정 위반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테니스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 다만, 수탁자를 감독함에 있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안 제12조제1항의 ‘체육시설’을 ‘테니스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표] 참조).

[표] 안 제12조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u>체육시설</u> 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 ----- <u>테니스장</u> -----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13) 사무의 위임(안 제14조)

제1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의 모든 사무는 각 도로관리사업소장(동부·남부·북부·강서)에게 위임한다.

- 안 제14조는 동 조례의 모든 사무를 테니스장이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14) 부칙 (안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은 동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임.
- 다만, 시는 테니스장 개방과 관련하여 야간 운영에 필요한 조명시설이 현재 고장나거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테니스장 개방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코트 바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 테니스장의 시설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 안 부칙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안 부칙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제 정 안 부 칙	수 정 의 견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도로사업소 청사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테니스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체

육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본 조례안 시행으로 테니스장 개방 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테니스장의 부정예약 및 편법 예약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음.